

고성군사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88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11. 19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11. 19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9. 11. 26

고 성 군 수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- 읍면 기능전환 및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읍면 정원의 감축으로 업무의 재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
- 읍면 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면적인 검토와 재정비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조정(안 별지)
- 환경녹지과 소관 일부 위임사무 조정 및 삭제(안 별지)
 -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중 청소차량 관리운영 삭제
 - 생활폐기물 수집, 운반처리 삭제
 - 오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(군 허가·신고 분) 삭제
 -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설치(군 허가·신고 분) 삭제
- 수산과 소관 위임사무 삭제(안 별지)
 - 신고어업(시행령 제33조제1항 1~3호에 한함)
- 도시과 소관 위임사무 삭제(안 별지)
 - 건축신고
 - 무허가 수도 단속
 -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
 - 가설건축물 신고
 - 토지형질변경 허가(농지전용신고, 건축신고 범위 내)

- 보건소 소관 일부 위임사무 삭제(안 별지)
 - 음식영업(폐업, 재개업) 허가 및 관련 사항
 - 집단급식소 신고사항
 - 대마취급자 허가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에 따라 읍면 정원의 감축으로 업무량이 과중되어 주민편익 향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의 능률향상과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하여
- 위임된 읍면사무를 공무원 배치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임사항을 재정비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9. 11.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